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			수 정 안			
[별표] 위임사무(제5조제1항 관련)				[별표] 위임사무(제5조제1항 관련)			
주관국	사무명	근거법령	수입기관	주관국	사무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행정관리국 (총무과)	1.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			행정관리국 (총무과)	1.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		
	〈삭제〉				가.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진보	○ 〈생략〉	보건소장
	가.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구의회 내 진보, 휴직 및 복직 나. 구의회 소속 별정직·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	○ 〈현행과 같음〉	〈현행과 같음〉		나.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구의회 내 진보, 휴직 및 복직 다. 구의회 소속 별정직·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	○ 〈현행과 같음〉	〈현행과 같음〉
	〈삭제〉				〈삭제〉		